

 신안산대학교	<b>대학홍보위원회 규정</b>	규정번호	4-1-48
		제정일자	2022. 3. 31.
		개정일자	2024.4.15.
		책임부서/팀·계	입학학생처

**제1조(명칭)** 위원회는 신안산대학교 대학홍보위원회라 한다.<개정 2024.4.15.>

**제2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학홍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 입시홍보 및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4.4.15.>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학과별 강의전담 이상 추천 1인과 외부 전문 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4.4.15.>

②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으로 한다. <개정 2023. 3. 30., 2024.4.15.>

③ 위원은 위원장 추천을 통해 총장이 임명하며, 따로 간사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4.4.15.>

④ 위원회는 권역별로 나누어 활동을 할 수 있다.<신설 2024.4.15.>

**제4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,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4.4.15.>

②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5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24.4.15.>

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는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<신설 2024.4.15.>

**제6조(회의소집)**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7조(기능)**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계획 및 제언을 마련한다.

1. 대학홍보 계획수립 및 수행
2. 입학홍보 계획수립 및 수행
3. 학과홍보 계획수립 및 수행
4. 입시전략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계획 수립 및 수행

**제8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24.4.15.>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보존하여야 한다.<신설 2024.4.15.>

**제8조의2(권역별위원회)**<신설 2024.4.15.> ① 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홍보의 효율성을 위해서 권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권역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재청으로 총장이 위촉·임명한다.

③ 권역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해당 권역에 대한 홍보계획 수립
2. 해당 권역에 대한 입시계획 수립
3. 해당 권역에 대한 협력 사항

④ 권역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9조(수당 등)** 외부위원 및 외부 권역별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

있다.

**제9조의2(예산)**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예산에 반영한다.<신설 2024.4.15.>

**제10조(운영세칙)**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.<조항변경 2024.4.15.>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